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223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김남희·송재봉·송옥주

윤후덕 • 박상혁 • 김정호

정성호 · 이강일 · 임광현

김우영 • 민병덕 • 김영환

한민수 · 김영진 · 이연희

안태준 · 최기상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급하여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로움

이에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수급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9조 및 제2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료기기(「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의 지급 또는 대여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의료기기 임대업자의 영업소

제29조의2제1항 중 "약제·치료재료"를 각각 "약제·치료재료·의료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ㆍ	
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	
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의료기기(「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의
	지급 또는 대여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료급여기관) ① 의료급여	제9조(의료급여기관) ①
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기관	
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	
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국가	
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
	기기 판매업자 또는 의료기기
	임대업자의 영업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제조업자등의 금지행	제29조의2(제조업자등의 금지행
위 등) ① 「약사법」에 따른	위 등) ①
의약품의 제조업자 위탁제조	
판매업자・수입자・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	
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	
수리업자 • 판매업자 • 임대업자	
(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	
이라 한다)는 <u>약제·치료재료</u>	약제·치료재료
와 관련하여 제7조제2항에 따	<u>· 의료기기</u>
른 의료급여의 범위 및 의료수	
가를 계산할 때에 제2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u>약제·치료재</u>	약제·치료재
료의 가격 한도나 판매가격을	료·의료기기
높이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당	
한 방법으로 기금에 손실을 주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